

## 5.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4월 9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0년 4월 13일
- 상정일자 :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년 4월 22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감면기준과 감면기간을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현행 조례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외국인등록표로 가족임을 증명하는 경우 공동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0.1.1. 이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되어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때 본세만을 추징하던 것을 감면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곽영구)

#### ○ 이 개정조례안은

- ▶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및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감면 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 안 제2조제3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11) 각호에 따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감면 대상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가족까지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음.

안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신설된 영 제8조제4항12)을 반영하여 외국인 감면 대상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동일 세대 여부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주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였음.

- ▶ 안 제7조에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으로 신설·이관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여 감면 근거 법률과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각각 명시하였음.

11) 영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12) 영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 ▶ **안 제14조**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감면 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2조제7호13)에서 삭제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로 대체되어 사용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추가하였음.

(변경 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변경 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법 제178조제2항14)에서 규정한 대로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당초 감면받은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성실납세자와의 불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되, 파산선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지방세 감면 관련 상위법과 감면 대상별 근거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1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삭제 <2017. 10. 24.>

<개정전>

7.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14) 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p>○ 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추정 사유가 되면 감면 금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외 사업 미추진 등에 고의성이 있다면 부동산의 매입 시점에 따른 시세 차익 부분도 추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p>	<p>○ 시세 감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의 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입법 정책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음.</p>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